



“산업폐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 유) 환경관리 담당자
 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적정사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11.7.22(금)부터 모든 폐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면 시행되는 “올바로시스템(입력대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폐기물로 확대)”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동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주요 관련업체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간한 "Allbaro System 사용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스템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담당자[기술지원팀 김두섭 TEL)02-718-79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현 행	2011.7.22 개정	위반시 벌칙사항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자의 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 폐기물 [오니,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및폐흡수제]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u>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u>	▶ 벌칙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p>▶ 지정폐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제2 제1항 지정폐기물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p>▶ 지정폐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제2 제1항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1조의제1항 각 호의 자가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p>·3백만원이하의 과태료</p> <p>[제18조의제3항이나 제24조의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p>
--	---	---

붙 임 : Allbaro System 사용안내서 1부. 끝.

받는 곳 : 조합원사(41개사) 및 전국매립협의회 회원사(16개사), 전국 주요 배출업체 (402개사), 건설환경협회 회원사(50개사) 등 총 509개사 대표이사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

담당 김진오 팀장 김두섭 사무국장 장기석 상근부이사장 이강곤 이사장 안경복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1 - 398호 (2011. 7. 22) 접수
 우 157-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4-2번지 우리벤처타운 1101호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 www.kiwrma.or.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iwrma@kiwrma.co.kr / 비공개

[붙임] Allbaro System 사용안내서

Allbaro시스템의 개념

1 2 3 4 5

-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 작성·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관리·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인허가 서류 신청 및 변경 등의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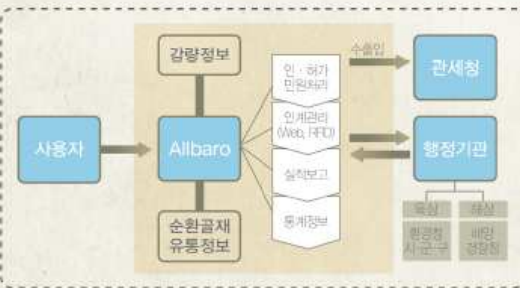
모든(AI)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척도 기준(Barometer)이 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함

www.allbaro.or.kr

Allbaro시스템의 구성

1 2 3 4 5

- Allbaro시스템은 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을 관리하는 인계관리시스템, 폐기물 인·허가 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 시스템, 수출입 폐기물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llbaro시스템의 구성

담당자 연락처

'Allbaro시스템' 고객지원센터

대표전화: 1644-0007
FAX: 0505-822-7805



- 주소: (404-7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 운영시간: 09:00~18:00 (연·휴일 제외) 및 월요일 13:00~18:00 (연·휴일 제외)

지사별	전화번호	팩스	관할지역
수도권지역본부	031-590-0611-7	0505-822-7810	- 경기도(5개시 2개군) -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영남지역본부	055-320-0323/6/8	0505-822-781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역본부	041-860-7711/2/6	0505-822-782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호남지역본부	062-949-0754-7	0505-822-782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지사	02-3153-0512-4/6-7	0505-822-7830 02-3273-2979-8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경기도(2개시 2개군) -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지사	033-240-9534/6	0505-822-7835	강원도
경북지사	053-580-7522-3	0505-822-784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북지사	063-530-0810/2	0505-822-7845	전라북도
충북지사	043-219-6430-1/3	0505-822-7850	충청북도
제주지사	064-722-6542	0505-822-7855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중심 한국환경공단!”

Allbaro시스템 사용안내서

2011년 7월 22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된 모든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발급업체는 Allbaro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변경 내용 참조)

이제 모든 사업장폐기물은 Allbaro시스템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 Allbaro시스템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변경(확대)

1 2 3 4 5

구분	기 준	개 정('17.7.22)	비 고
사업장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2조제8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자의 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목의 사업장 폐기물 가. 오내(일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나. 광채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조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일 평균 5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호의제항 지정폐기물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호의제항 지정폐기물 제2조제1항 각호외의 사항으로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변동사항 없음

〈신고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Allbaro시스템 사용절차

1 2 3 4 5



- 폐기물 인·허가 서류 확인 및 발급: 폐기물배출·운반·처리계획 및 허가 사항을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 및 관련서류 발급
- 사용신청: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후 Allbaro시스템에 사용 신청
- Allbaro시스템(www.allbaro.or.kr)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해당사항 입력
- 회원가입 완료 후 담당자의 신원확인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및 인허가 서류(배출 및 처리계획신고필증, 처리업허가증, 수집운반허가증 등) 사본을 한국환경공단 관할 본부 또는 지사로 팩스 송부
- 폐기물 기초정보등록: 회원가입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폐기물처리 허가사항 등을 사용자가 Allbaro시스템에 직접 등록
- 사용승인: 사용신청자의 신원 확인 후 사용승인 및 통보
- Allbaro시스템 사용: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로그인하여 전자인계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후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 작성, 대장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관련 업무 수행
-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인터넷으로 등록·관리
-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인계정보 및 관리대상 내역을 기반으로 모든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배출 및 운반·처리실적보고를 간편하게 등록·제출
- 인·허가 서류 신청 및 발급: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인·허가업무를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일괄처리
- 폐기물 통계정보 분석 및 생성: 사업장의 폐기물 기초정보와 폐기물 인계·인수정보 등의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생성
- 지리정보시스템: 폐기물정보에 공간정보를 추가하여 업체위치·분포조회, 변경검색 및 업체 간 경로분석 등 시각적인 폐기물정책지원서비스 제공

Allbaro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1 2 3 4 5

● 배출자(위탁량)을 알고있는 경우)

- 1 Allbaro시스템 접속 후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인계서 작성]클릭
- 2 [폐기물종류]선택 → [위탁량]입력 → [차량번호]선택 → [저장] → 전자인계서 비밀번호 입력
*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서 입력

● 배출자(위탁량)을 모르는 경우)

- 1 Allbaro시스템 접속 후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인계서 작성]클릭
- 2 [폐기물종류]선택 → [차량번호]선택 → [저장] → 전자인계서 비밀번호 입력
- 3 처리자한테서 위탁량 확인 후 Allbaro시스템 접속하여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인계서 조회/수정]클릭
- 4 폐기물처리여부의 [폐기물 처리]선택 → [조회]
- 5 위탁량 입력 → 확정여부 [예] → [저장]
* 위탁량을 모르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 운반자(인계서 작성)

- 1 Allbaro시스템 접속 후 [전자인계서 관리]의 [운반자 인계서 조회/수정] → [조회] → 인수내역 확인 · 선택(보관장소 경우 시 체크) → [저장]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 전자인계서 입력
* 현재능력에 따른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현재능력에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 보관 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전자인계서 입력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검사용으로 반입되어성분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

● 처리자(인계서 작성)

- 1 Allbaro시스템 접속 후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자 인계서 조회/수정] → [조회] → 인수내역 확인 · 선택 → [저장]

● 처리자(처리실적 등록)

- 1 Allbaro시스템 접속 후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자실적등록수정] → [처리일자 입력] → [처리방법선택] → [조회] → [저장]
* 처리일 및 처리일자 입력은 폐기물 처리 후 2일 이내(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 폐기물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오류인계정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수정가능(단, 폐기물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정기간 적용 불가)
- 오류정보확인: [전자인계서 관리] → [오류인계서 확인]
(오류정보 발생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